

# 계약제 초빙교원 인사규정

제정	1995.03.01	1차 개정	2009.03.01
2차 개정	2012.12.01	3차 개정	2016.01.01
4차 개정	2019.02.01	5차 개정	2019.08.26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정은 우송정보대학(이하 “본 대학”이라 한다.)에서 계약제로 초빙하여 임용하는 초빙교원(이하 “교원”이라 한다.)의 인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정의)**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1. “초빙교원”이라 함은 본 대학 전임교원이 아닌 국내·외인으로서 고등교육법시행령 제7조제3호에 해당되는 자를 말하며 초빙교원, 강의전담초빙교원, 산학협력중점초빙교원으로 구분한다. <개정 2016.1.1., 2019.08.26.>
2. “임용”이라 함은 신규임용, 재임용, 직위해제 및 면직 등을 말한다. <개정 2019.08.26.>
3. “학과(부)장”이라 함은 초빙교원이 담당하는 강의 또는 실험실습이 개설된 학과의 장을 말한다. <개정 2016.1.1.>
4. 산학협력중점초빙교원에 대하여는 “산학협력중점교원 인사규정”을 적용한다. <신설 2016.1.1.>

**제3조(자격)** 초빙교원은 「대학교원자격기준등에관한규정」 제2조에 따라 조교수 이상의 자격 기준을 갖춘 사람 또는 이에 준하는 해당 분야 경력을 보유한 사람으로 한다. <개정 2016.1.1., 2019.08.26.>

**제4조(임무)** ① 교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담당한다.

1. 본 대학의 강의 또는 실험실습 지도
2. 본 대학 전임교원과의 공동연구
3. 학생의 취업지도와 기타 교육 및 연구활동 지원
4. 본 대학의 학사행정 지원 등. <신설 2016.1.1.>

② 초빙교원은 매주 9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강의나 실험실습 지도를 담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교육과정 운영상 총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2시간까지 담당할 수 있다. <개정 2016.1.1., 2019.08.26.>

**제5조(임용절차)** ① 교원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임용한다.

② 교원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 학과(부)장의 추천에 의할 수도 있다.

③ 임용시에는 교원임용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.

**제6조(계약임용)** ① 교원의 계약임용 기간은 1년으로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단, 총장이 학사운영상 인정할 경우 1년 내외의 기간으로 계약할 수 있다. <개정 2016.1.1., 2019.2.1.>

② 교원의 총 계약기간은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. 다만, 업적평가가 우수하고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2회에 한하여 연장 계약할 수 있다. <개정 2019.2.1.>

**제7조(임용계약서)** 임용계약은 서면으로 하되 다음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. 다만, 외국인의 경우에는 이를 달리할 수 있다.

1. 교원의 신상명세
2. 근무대학 및 직급, 연봉 등
3. 임용절차 및 임용계약기간
4. 임용계약기간 중의 신분 및 임무
5. 임용계약기간 만료 후의 퇴직
6. 관할 법원

**제8조(직급부여)** 교원은 직급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초빙교수로 통한다.

**제9조(보수)** ①교원의 보수는 연봉제로 하며 매월 균등 분할하여 지급한다.

②제1항의 보수를 지급함에 있어 보수의 종류, 지급범위, 지급액 및 지급방법 등은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.

③교원에게도 필요에 따라 별도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**제10조(업적평가)** 교원의 업적평가는 총장이 별도로 정하여 시행한다. <개정 2016.1.1.>

**제11조(면직)** ①교원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당연히 퇴직된다. <개정 2016.1.1.>

②교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계약기간에 관계없이 총장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면직할 수 있다.

1. 제4조의 임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할 때
2.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지키지 못하였을 때
3. 제10조의 업적평가 결과가 불량하였을 때
4. 기타 활용부서장이 부적격하다고 인정할 때

**제12조(적용)** 교원의 인사에 관하여는 관계 법령 및 본 학원 정관이나 본 대학 관계 규정을 적용하고,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.

#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9년 2월 1일부터 시행하되,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.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9년 8월 26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적용의 특례) 이 규정 제4조제2항은 2019년 8월 1일 이후 신규임용자에게 적용하며, 이전 임용자는 기존의 규정을 적용한다.